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72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송재봉ㆍ이수진ㆍ장종태

소병훈 • 이병진 • 임호선

김성환 • 이광희 • 이건태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송전한 전력량만큼을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이처럼 상계에 의한 거래 방식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에 대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계된 전력량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취지에 맞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상계(相計)전력 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 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신·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 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계(相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 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의 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계전력 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송·수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6조의11(신ㆍ재생에너지의
	<u>상계전력거래에 대한 부가가치</u>
	세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용량 이하의 전기발전설
	비를 설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u>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u>
	<u>자와 「전기사업법」 제2조제1</u>
	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계(相
	計)전력거래 방식으로 전력을
	<u>송·수전함에 따라 상계된 전</u>
	력량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
	세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
	<u>지 아니한다.</u>